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근로자(연구실안전전문인력) 채용 공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2024-87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방사선 및 연구실안전 업무를 담당할 공무직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1. 채용 개요

채용 분야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공무직 (연구실안전전문인력)	1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충남 부여)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방사선장비 운영 및 관리 ○연구실안전관리(위험물) 업무

□ 근로조건 및 보수

- (보 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임금책정기준에 따름(2024년 기준)
 - 현재 1호봉 : 월 2,693,847원(4대보험료 공제 전, 보수 외 기타 수당* 지급)
 - * 수당 및 상여금 지급: 식비 140,000원/월, 위험근무수당 50,000원/월, 명절상여금(연2회, 설·추석 각 550,000원, 복지포인트 500,000원/연1회)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1일 8시간)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기간) 3개월의 실무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쳐 공무직 채용
-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자격

- (연령) 만 18세 이상인 자로(2005. 4. 10. 이전 출생자) 공고일(2024. 4. 11.)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자
- (결격사유) 「문화재청 공무직등 근로자인사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 격 사 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방사선동위원소 일반면허 이상의 자격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별표2

- ①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사람
 - 기술사 :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 ② 기능장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기능장 : 가스
- ③ 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기 사 :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 ④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⑤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산업기사 :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1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 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 관련 직무분야

-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경력

※ 경력(재직)증명서에 업무 또는 분야가 연구실 안전업무로 명시된 경우에 한함

○ 우대사항(적극적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① **관련 분야 자격증** : 자격증 차등(기술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구분	우대 요건
기술사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기능장	가스
기사 및 산업기사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가스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기술사, 기능장, 기사자격증의 경우, 응시요건으로 선택한 자격증은 우대요건에서 제외	

② **관련 분야 근무경력** : 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 충족 이후 경력에 한함**

③ **우대요건 세부 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 (전화번호, 전자우편)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우대 요건 】 < 자격증 분야 (건별 차등 우대) > ■ 국가기술자격법 상 안전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안전관리분야(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분야별 1개만 적용(상위 자격) - 각 자격 기술·기능 분야별 점수 부여 합산(최대 배점 범위 내)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격증만 인정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잃은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 분야 (연차별 차등 우대) > ■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응시 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경력이 불확실할 경우 불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문화재청 공무원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17조제1항 적용)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모두 합격(소극서류전형)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자기소개서, 자격, 경력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우대요건
 - * 선발범위 내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 초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4. 26.(금)
 - 한국전통문화대학교(<https://nuch.ac.kr>), 문화재청(<http://www.cha.go.kr>)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면접시험 기준 및 방법 >
 - 5개 평가항목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 | |
|--------------------|----------------|
| ①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관련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4. 시험 일정

- 시험 공고 : 2024. 4. 11.(목) ~ 4. 19.(금)
- 원서접수 : 2024. 4. 17.(수) ~ 4. 19.(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4. 4. 26.(금)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24. 4. 29.(월) ~ 4. 30.(화)
 -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
- 면접시험(예정)일 : 2024. 5. 3.(금)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4. 5. 9.(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4. 4. 17.(수) ~ 4. 19.(금)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의 경우 겹봉에 “연구실안전 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해 접수합니다.
 -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2층) 교무과 채용담당자
 - 전자우편 : mani0705@nuch.ac.kr
 - ※ 전자우편 제목은 반드시 “성명(연구실안전전문인력 채용 응시원서)”로 기재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 기타 서류전형 참고서류(필요시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필수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 「문화재청 공무원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3조 제2항 ‘부패방지 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징구
- 응시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6. 유의 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및 동일채용 분야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로(☎ 041-830-717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채용분야	성명	연락처
* 접수담당기재	공무직 (연구실안전전문인력)		* 휴대전화 번호 기재

▣ 작성목록(총괄표)

※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계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연 번	목 록	제 출
1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2	응시원서(필수) * 별지서식 제1호	
3	이력서(필수) * 별지서식 제2호	
4	자기소개서(필수) * 별지서식 제3호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별지서식 제4호	
6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필수) * 별지서식 제5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 별지서식 제6호	

* 내용을 작성·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란에 “○” 표시,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공무직근로자(연구실안전전문인력)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시험합격을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연구실안전전문인력)		※ 접수 번호	
응시자격				
성명	한글		생년월일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한자			
주소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응시원서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 또는 워드(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로 작성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요령》

1. 응시분야 : 채용예정 분야를 정확하게 기재
2. 응시자격 : 공고문의 세부 응시자격을 참고하여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그대로 기재
※ 응모 분야별 필수 자격 취득내용과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요건 1개지만 기재
3. 성 명 : 한글 및 한자 성명을 정자로 기재
4. 생년월일 :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5. 주 소 :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
6. 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일반전화는 지역번호도 기재

『※』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력 서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공무직근로자 (연구실안전전문인력)	성 명	
----------	-------------	----------	-----------------------	-----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연락처	휴대전화	
	한자			전자우편	

교육사항(대학교 이상만 기재)

내 용(대학교 이상만 기재)			
※교육구분	전공	이수기간	비고(졸업, 수료 등)
		‘ . . . ~ ’ . . .	

※ 교육구분 : 학사, 석사, 박사 등 작성

경력사항(최근 경력순 / 경력 증명서로 담당업무 등 세부 사항 증빙이 가능한 경력만 기재)

주요경력 (상근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책	담당업무
		‘ . . . ~ ’ . . . (년 월)		
		‘ . . . ~ ’ . . . (년 월)		
		‘ . . . ~ ’ . . . (년 월)		

자격사항

자격명	취득년월일	자격 검정(시험)기관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 작성자 : (서명)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워드프로세서로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첨부서류는 자격요건 및 서류 심사 시 배제될 수 있음.

자 기 소 개 서

응 시 번 호	※ 담당자 기재	응 시 분 야	공무직근로자 (연구실안전전문인력)	성 명	
------------	-------------	------------	-----------------------	-----	--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총 3매 이내로 작성
-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3장 이내로 작성

◎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5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문화재청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필요시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들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향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생년월일 . . .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